#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2013가단170573]



# 【전문】

## 【원 고】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인)

【변론종결】2014. 6. 11.

## 【주문】

#### ]

-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192,513,01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1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서행으로 유턴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전방 적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1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1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서행으로 유턴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1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1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서행으로 유턴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1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